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선갑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72
----------	------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17일

발 의 자 : 김선갑 의원(1명)

찬 성 자 : 문형주 · 서윤기 · 최판술 · 김기대 · 김희걸 · 이순자 · 김기만 · 신원철 · 김종욱 · 이복근 · 박준희 · 오봉수 · 양준욱 · 김미경 · 박기열 · 김문수 · 김광수(도봉) 의원 (17명)

1. 제안이유

- 2013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서울시의 격차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한 입법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 조례 내용에 따른 구체적 정책이 추진되거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례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고, 종합계획의 수립 역시 추진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조례의 문제를 보완하여 실제 구체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생활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함
- 나. 서울특별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자치구 및 생활권역이나 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라. 균형 잡힌 삶의 질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통해 격차 지표를 선정하고 이 격차 지표의 변화추이를 관리 및 공표 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및 제3항)
- 마.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
- 바.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증진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항)
- 사.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 아.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제1항)
- 자. 지역간 격차지표와 서울시민복지기준 등 본 조례에 따른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주요 격차 지표의 현황,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 및 사업 방안, 격차영향평가에 관한 사

항, 서울시격차개선보고서를 2년마다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보고 하도록 함(안 제24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생활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 잡힌 삶의 질”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위험하거나 취약하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2. "격차"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함) 및 생활권역이나 동 단위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여러 복지 영역의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서의 질적·양적 차이와 그 결과로 나타난 생활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3.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2012년 10월 12일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서울시의 합의에 따른 공동발표로 이루어진 기준 내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자치구 및 생활권역이나 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지역별 격차 해소와 더불어 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③ 시는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을 통해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시는 시민 개개인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⑤ 시는 지역에 따른 격차의 수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결과에 따른 진전 수준을 공개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시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달성, 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 격차개선보고서의 작성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지역 여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전제로 지역에 따른 격차해소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 ① 시장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 사업

제8조(균형 잡힌 삶의 질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분야별로 중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목표는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격차 지표를 선정하고 이 격차 지표의 변화추이를 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은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
4.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기본계획
5.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교육지원기본계획
6. 그 밖에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종합계획

③ 제2항의 분야별 종합계획에는 해당 분야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격차지표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분야는 별도의 격차해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구 협조)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10조의 목표와 분야별 종합계획의 내용이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관련된 분야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구청장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증진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의 분야별 종합계획에 따른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사업
2. 제9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저수준이나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민·가구를 위한 집중지원사업
3.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지원사업

②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공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시민을 위한 집중지원사업이나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장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

제13조(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격차 영향 평가를 주관하며 서울시격차개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다. 다만, 전문적인 분야 등에 관한 격차영향평가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의한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
2. 제9조 제3항 격차 지표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른 최저기준 미달 가구 및 시민에 대한 우선적 지원 시책
3. 제12조 제3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계획
4.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분야별로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사전 심의
5.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분야별로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의 격차 영향 평가에 따른 수정 및 보완 방향
6. 그 밖에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격차해소와 관련되는 주요 제도, 사업,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분야별 종합계획 관련 개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분야별 종합계획의 지역간 격차해소 부합 여부를 자문하고 그 의견을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하되 민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 평생교육정책관, 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국장, 재정기획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의원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한 4명 이내의 자치구 부구청장
3.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
4.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
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
6.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
7.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제14조 제3항 제3호부터 제7호의 분야별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분과위원회를 대신하는 분야별 위원회의 인원은 본 위원회 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는 특별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지원 및 결과보고 등

제2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별도의 기준에 따라 배분 및 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근거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23조(결과의 공표) 시장은 지역간 격차지표와 서울시민복지기준 등 본 조례에 따른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 격차 지표의 현황과 서울시격차개선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지역간 격차지표와 서울시민복지기준 등 본 조례에 따른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주요 격차 지표의 현황,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 및 사업 방안, 격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등 서울시격차개선보고서를 2년마다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시격차개선보고서는 제13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격차해소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간 격차해소 사업에서의 협력을 위해 자치구, 법인·단체에게 차

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수렴)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시민과 관련분야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9조(실태조사), 제12조(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 지원사업), 제13조(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제12조의 경우 실태조사 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추계가 곤란하여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다만 참고를 위해 실태조사비와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계한 자료(참고)를 첨부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임준혁 예산분석관(02-3705-1282)

【참고】 비용추계

○ 전제 및 방법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 2) 추계기간 5차년도 이후에도 비용발생
- 3) 실태조사는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총비용 : 1,501,415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 조사(제9조)	295,083	295,083	295,083	295,083	295,083	1,475,415
	위원회(제13조)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소계(b)	300,283	300,283	300,283	300,283	300,283	1,501,415
	총비용(b-a)	300,283	300,283	300,283	300,283	300,283	1,501,415

가.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 비용 : 1,475,415천원

- 비용 = 연간비용 × 5년(추계기간)

- 연간비용 : 295,083천원

- 책임연구원 = 24,635천원 = (3,079,435원×1명)×8개월
- 연구원 = 37,780천원 = (2,361,268원×2명)×8개월
- 연구보조원 = 37,882천원 = (1,578,429원×3명)×8개월
- 조사원 = 107,640천원 = (53,820원×40명×50일)×3건
- 자료입력 / 정리원 = 16,146천원 = (53,820원×30명×10일)×20건
※ 6,000 가구조사(조사원 1인 3가구 조사, 자료입력 / 정리원 1인 20가구 입력)
- 유인물제작 = 20,000천원
- 조사답례품 = 36,000천원(6,000가구×6,000원)
- 여비 = 5,000천원
- 연구재료비 = 10,000천원

